

在外 韓國人 工學 및 理學系(基礎科學分野) 學者誘致計劃

—第5次 IBRD 教育借款事業—

文教部 大學局

1. 趣旨

工學 및 基礎科學教育 育成을 위한 第5次 IBRD 教育借款事業에 의하여 在外 韓國人 學者를 우리나라 大學에 誘致, 活用함으로써 先進國의 學問과 技術을 導入, 普及하고 高度產業發展의 根幹이 되는 高級技術人力 蜂出에 寄與코자함.

2. 基本方向

- 工學 및 基礎科學 分野의 不足教授 补充을前提함.
- 工學 및 基礎科學系 大學院을 開設하고 있는地方大學 및 財政規模가 零細한 大學의 教授誘致를 優先함.
- 國際競爭에서 比較 優位를 確保할 수 있는 戰略技術分野의 專攻者 誘致를 優先함.
- 誘致教授의 活用으로 大學院 教育強化를 期함.

3. 誘致區分

- 가. 長期誘致 : 歸國後 3年以上 勤務
- 나. 短期誘致 : ① 歸國後 1年以上 3年未滿
 ② 歸國後 6個月~1年未滿

4. 資格要件

- 身分과 國家觀의 確實한 者로서

가. 工學 및 理學(基礎科學分野)博士學位所持者
 或은 博士學位課程 修了後 學位取得이 決定된者

나. 工學 및 理學(基礎科學分野)碩士學位 所持者로서 大學에서 專講以上 講義 經歷이 2年以上上인者

5. 誘致計劃人員 및 算算

가. 年度別 誘致計劃

年 度 別	誘致計劃 人員	豫 算 額	備 考
1981	17	\$ 153,000	長期誘致 基準
1982	40	\$ 221,000	人員 및 所要豫
1983	43	\$ 485,000	算額
計	100	\$ 859,000	

나. 1人當 支援基準

1) 長期誘致 : 1人當 平均 \$ 8,500(\$5,100,000)

- 航空料(5人家族 基準) :

$$\$1,000 \times 5\text{名} = \$5,000$$

- 移轉費 : \$1,000

- APT 入住補助 : \$2,000

- 其他經費 : \$500

2) 短期誘致

- 1年以上 3年未滿者 : \$5,000

$$\cdot \text{往復航空料} : \$1,000 \times 2\text{回} \times 2\text{人} = \$4,000$$

$$\cdot \text{APT 入住補助} : \$1,000$$

- 1年未滿 6個月以上者 : \$2,000

$$\cdot \text{往復航空料} : \$1,000 \times 2\text{回} = \$2,000$$

※ 申請狀況에 따라 人員 및 支援金額을 調整施行함.

6. 致誘方法 및 節次

- 資格要件에 符合되고 身元이 確實한 者에 대하여 誘致大學에서 主管 誘致交涉 推進
- 外國駐在公館에 連絡海外學者 實態 및 情報 등 范集(名單 勤務機關 資格要件 등)
- 在美 在歐洲 韓國人 科學技術者協會 交涉團 訪問 弘報活動 展開
- 交涉時 駐在公館을 經由 身元과 家族事項을 確認 保障받음.
- 交涉時 入國後 大學에서의 處遇와 任用穩定職 등 條件을 事前 提示 協議
- 本人과의 合意承諾이 完了되면 身分과 學位 經歷 등을 證憑할 資料를添附 別添書式에 의거 文教部에 申請
- 83.12.1까지 誘致大學에서 任用하고 經費 申請할 수 있는 海外學者

7. 誘致業務 擔當事務所 設置

- 가. 任務 : 美國, 歐洲 現地에서 誘致業務을 持續的으로 推進
- 나. 構成 : 在美, 在歐洲 韓國人科學技術者協會에 業務委嘱 文教部와 連繫運用(美國 1個所, 歐洲 1個所)
- 다. 活用方案 : 同協會를 中心으로 弘報 및 個別 接觸 誘致勸諭 등 誘致活動 展開
- 라. 經費支援 : 會議費 및 弘報活動費, 通信費, 事務費 等을 支援計劃임.
- 마. 其他事項 : 現地 駐在教育官을 通하여 行政의 業務連絡體系 確立

8. 誘致交涉團 派遣計劃

- 가. 派遣任務
 - 誘致의 趣旨弘報(誘致條件 등)
 - 在外學者 實態調查
 - 個別接觸 誘致勸諭
 - 國內大學 實態紹介

- 誘致事務所設置 協議
- 希望者實態調查 및 國內大學에 通報
- 나. 派遣地域 : 美洲地域과 歐洲地域
- 다. 派遣팀 構成 : 誘致業務에 經驗있고 外國實情에 熟悉 者로서 工學教育開發委員會에서 推薦 教授 : 4名, 文教部關係官 : 2名
 - 第1팀 3名 : 歐洲地域
 - 第2팀 3名 : 美洲地域

9. 誘致教授의 活用

- 主로 大學院 教育強化에 活用
- 教育課程 및 教育內容 改善計劃推進에 參與
- 戰略產業(國際輸出趨勢에 對備) 分野의 特殊 Program 開發 등에 參與
- 第5次 教育借款導入資材의 活用技術 普及

10. 誘致教授 處遇對策(誘致大學 措置事項)

- 가. 住居對策을 樹立 便宜提供(傳賃入住 补助等)
 - 나. 特殊分野 極端學者의 경우 特別研究費 支給 등 處遇對策 樹立
 - 다. 研究室 및 實驗室 揭供
 - 라. 研究助教 및 技士 등 支援人力 提供
- ※ 誘致大學에서 學校의 財政形便을 勘案, 自發的 對策을 마련중임.

11. 經費支給

- 가. 誘致對象者에 對한 誘致決定事項을 申請機關(文教部) 및 本人에게 通告
- 나. 航空票는 歸國確定日을 考慮하여 本人에게 P.T.A로 送付
- 다. 移轉費(이사비)는 領收證添附 歸國後 申請
- 라. APT 入住時 契約書添附 經費 申請

12. 其他 行政事項

- 가. 誘致活用機關은 誘致決定者에 對하여 任用狀寫本을 文教部에 揭出
- 나. 誘致對象者は 誘致決定通報를 받은 後에 居住國을 出發해야 하며 歸國即時 歸國 및 精算

報告書와 航空券寫本을 文教部에 揭出
다. 誘致決定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歸國豫定日
로부터 2個月以內에 歸國치 않을時 誘致決定
을 取消할 수 있음.

※ 其他問議 및 要望事項은 文教部 大學局 大
學財政課로 連絡하시기 바랍니다,
TEL 720-3337 · 720-3338 · 720-5119

'83 學年度 大學獎學金 支給指針

I. 方針

1. 가계곤란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복지장학제도의 구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포상장학제도 실시
2.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대여제 확대 실시
3. 장학혜택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는 자세 배양

II. 등록금재원에 의한 장학금(학비감면)

1. 장학금 재원 확보기준

1) 국립대학(교)

- 입학금 및 수업료 : 법정면제자률 제외한
 참여 학생에 대한 징수총액의 30% 해당액
- 기성회비
 -1, 2학년 : 징수총액의 30% 해당액
 -3학년 : 징수총액의 20% 해당액
 -4학년 : 징수총액의 10% 해당액

2. 사립대학(교)

- 1~2학년 : 등록금 징수총액의 20% 해당액
- 3~4학년 : 등록금 징수총액의 10% 해당액

2. 장학금 수혜자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 우선분야

1) 선발기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을 대상으로 하되 가계곤란자 위주로 선발
하여야 함.

2) 장학금 지급 우선분야

- 장학금은 다음에 열거한 분야 재학생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수학,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과학분
 야 및 응용과학분야
 - 학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선
 호학과
 -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우수선수 발굴양
 성을 위한 체육분야
 - 한국지도자 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우수
 농촌장학생(재학중 등록금 전액 면제)

3)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를 우선 할 것을 권장함.

3. 장학금 지급방법

- 1) 무상, 근로, 대여제를 병행 실시하여 장학
 기금 확충을 위하여 대여제를 확대 실시하
 여야 함.
- 2)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은 등록금재
 원 이외의 재원에서 지급하도록 할 것(학술
 1060-191('83.3.10) 참조).
- 3)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재원의 지
 급비율은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시행
 함.
- 4) 장학금 지급액은 등록금 수준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극빈 또는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는 등록금 감면 이외에 생계비 보조를 권장
 함.
- 5)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대학소정의
 장학증서를 교부(수여식 개최)하고 대학신
 문에 게재하여 장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학교와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배려하여야 함.

III. 외부장학금의 적극 유치

1. 장학단체나 개인의 장학금을 적극 유치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체(개인)에 대한 사의 표시와 수혜학생과의 상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2. 각대 학과 유관한 기업체, 문화재단 및 인사들에게 장학법인 설립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협조하여 장학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IV. 근로 및 봉사장학금의 개발과 확충

1. 학내외의 각종 봉사나 근로부서를 개발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봉사 및 근로

장학제도를 확충하여야 함.

2. 학내 복지시설의 이익금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여야 함.
3. 외부의 단기용역, 또는 방학중 임시 고용지원 등 학생 아르바이트 보도체제를 강화하여 학비조달 방안을 알선 지원하여야 함.

V. 동문회 장학기금의 설치와 확대

동창회 조직을 통한 장학기금의 설치 확대를 적극 권장하니 총(학)장은 동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VI. 기타사항

금융기관의 장단기 학자금 응자제도는 본 장학제도와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私立大學校 直營 構內食堂에 대한 附加價值稅 免除措置

學生의 福祉向上을 위하여 私立學校에서 直營하는 構內食堂에 대한 附加價值稅를 免除措置하도록 「租稅減免規制法」이 改正・公布(82. 12. 21

字 法律 第3575號) 되었읍니다. 該當學校에서는 管轄 稅務署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기 바랍니다.